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1. 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2.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

가. 센터와 서비스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기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이용 계약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 기간내로 합니다.

다.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과 상호협의를 통하여 계약기간에 관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3. 센터의 의무

가.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아니됩니다.

나. 센터는 계약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합니다.

다. 센터는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의 의무

가.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의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센터와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요원에게 적극 협력 하여야 합니다.

나.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센터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다. 서비스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 군·구의 이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5.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의 내용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방문요양서비스 :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1) 방문활동서비스의 세부 내용

-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등

-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 인지관리 지원 : 인지행동 변화 관리,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등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생활상담 등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세탁 등

나.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로 장기요양요원 2인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1) 방문활동서비스의 세부 내용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용료의 산정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의합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월 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그 밖의 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릅니다.

나. 월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며, 동법 40조 3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릅니다.

라.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1)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2)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7.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와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신원인수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내역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된 서비스 이용 업무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센터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 이를 센터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의 건강상태 이상 등 신변 변동사항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 내용이 변경될 경우 즉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가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5)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합니다

8. 센터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가. 배상책임 : 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아래와 같이 가입합니다.

1)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장기요양요원이 수행하는 전문직업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이용자에게 신체장해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힘으로서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2)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가족이나 친족인 경우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나. 면책범위 :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책임이 없습니다.

1) 이용자가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센터 및 장기요양요원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용자(보호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기타 면책범위와 관련된 보험의 약관과 법령규정 및 판례에 정한 경우

9.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센터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때
나. 이용자(보호자 또는 대리인)가 서비스 이용 종결을 원할 때
다. 이용자가 타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라. 이용자의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센터 업무에 막대한 지장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마. 이용자의 특정 질병으로 인해 장기요양요원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바. 이용자가 센터운영에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사.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등을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아. 기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